

第268回國會  
(臨時會)

建設交通委員會會議錄  
(請願審查小委員會)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7年6月25日(月)

場 所 建設交通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군 강상면 구간 노선(안) 개선에 관한 청원
2.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3.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관한 청원
7.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8.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 조속처리에 관한 청원
9.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의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10. 경매완료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구제에 관한 청원
11. 오미재터널 공사 착공 요망에 관한 청원
12. 비주거 건물의 위반시설 자진철거 대책마련과 일부 양성화 요구에 관한 청원
13. 중앙선·경춘선 소음방지를 위한 망우역 일대 터널화에 관한 청원
14.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 폐지에 관한 청원
15. 신안산선 대림삼거리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
16.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의 시행령 폐지 검토에 관한 청원

審査된案件

1.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군 강상면 구간 노선(안) 개선에 관한 청원(정병국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
2.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 ..... 3
3.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영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3
3.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영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김영춘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5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김덕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5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유재건 의원의 소개로 제출) ..... 5
7.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김춘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 7
8.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조속처리에 관한 청원(이주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0
9.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의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영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0
10. 경매완료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구제에 관한 청원(유선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1
11. 오미재터널 공사 착공 요망에 관한 청원(박세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3

- 12. 비주거 건물의 위반시설 자진철거 대책마련과 일부 양성화 요구에 관한 청원(이낙연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3
- 13. 중앙선·경춘선 소음방지를 위한 망우역 일대 터널화에 관한 청원(임인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
- 14.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 폐지에 관한 청원(최재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7
- 15. 신안산선 대립삼거리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전병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8
- 16.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의 시행령 폐지 검토에 관한 청원(정화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 ..21

(14시19분 개의)

○소위원장 유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268회 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대상이 되는 청원은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청원 취지와 검토의견을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군 강상면 구간 노선(안) 개선에 관한 청원(정병국 의원의 소개로 제출)**

○소위원장 유필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군 강상면 구간 노선(안) 개선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심사자료 첫 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병국 의원께서 소개한 청원인데요, 양평군 강상면 구간은 2002년부터 10년간 공사로 13.6km 구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구간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약도 같은 게 있나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준비해 왔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정부에서 설명하시지요.

**○건설교통부기반시설본부도로기획관실도로정책팀장 송기섭 (지도를 가리키며)**

여주-양평 구간은 3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36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주-양평 1·3공구 공사를 현재 착공 중에 있고요, 청원이 들어온 것은 2공구 구간에 대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공구 노선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여기에 전원주택단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환경이나 조망권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산측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산측으로 갔을 경우에는 또한 상대 민원이 똑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동, 4개 축사를 이것 때문에 뜯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500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더욱 저기 한 것은 1공구·3공구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를 다 착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 착공 중인 노선을 또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차관,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상대 민원입니다.

이미 사업이 2000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나름대로 기왕의 노선에 따른 질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확정되어 가지고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뒤 구간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선을 바꾸게 되면 바뀌게 되는 지역 쪽 사람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점이 가장 큰 이유고요.

바뀐다 하더라도 똑같은 민원이 또 나오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애기됐더라도 6~7년 전에 이미 제기가 됐어야 될 애기인데 이제서야 제기되어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공사비도 실은 49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 정도면 전체 공사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위원님들,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실시설계가 2002년도 10월에 끝났고 그해 11월에 도로구역 결정고시까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들 지역 주민들이 노선이 어떻게 간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고 더구

나 양쪽 공구, 1공구하고 2공구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이미 착공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창 의원님께서는 노선을 바꾸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신 바가 계십니까.

○소위원장 유필우 이재창 의원님이 여기 무슨 관련이 있나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2002년에 이미 실시계획 승인되고 2003년에 착공을 했던 말이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1공구는 2002년도에 착공하고 3공구는 2003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가운데 연결구가 있는데 1공구·3공구 설계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인기 위원 이재창 의원님 말은 예산이 490억 원 들어가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3공구는 공정률 22% 진행 중이고……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소위원장 유필우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이진구 위원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그러면 이것은 이미 착공을 하고 여러 가지 실시계획 승인된 지 오래된 사항이 되어서 소위원회에 계류시켜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 2.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

### 3.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영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26분)

○소위원장 유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과 제3항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취지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이 청원은 작년 6월에 회부되어 왔는데 이미 작년 11월 14일자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매도청구권의 대지권원 확보 요건을 80%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위 말해서 협의매수를 하도록 한 소유권자는 '10년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자' 이렇게 해서 금년 1월

11일자로 이미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엇그제 법안소위에서 안홍준 의원께서도 대지권원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청구권을, 나머지 5%에 대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해서 심사한 결과 계속 현행대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웅 의원께서 소개한 이 내용은 이미 작년 11월 심의 때 요건 80%는 충족이 되었고 또 매도청구 대상 제외자는 10년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청원도 더 이상 계속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것은 주택법시행령상 주택조합의 승인신청 시에 소유권을 100%에서 80%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도정법상의 주택조합과 달리 일반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일단 100%를 확보함으로써 소유권 분쟁에 의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분간 이대로 두고, 정부에서 혹시 다른 의지가 있으면 그때 또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정부 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첫 번째 항목은 김원웅 의원께서 소개한 청원의 취지가 대부분 달성이 되었고, 그 뒤에 그보다 더 완화되어서 95% 확보한 경우에는 10년 소유 여부에 관계치 아니하고 모두 매도청구권을 부여하자 하는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이게 엇그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김원웅 의원 뜻이 일단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80%만 확보하고 나머지 20%를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주택조합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조합은 자기들이 돈 모아서 대지를 확보한 다음에, 원칙적으로 주택법에서 사업자 등록하지 아니하면 주택 건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 집 자기가 짓는 것이다 해서 예외적으로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순수한 공권력이 전혀 개입될 소지가 없는 주택조합에 대해서 별도로 20% 매도청구권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는 게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구 위원 계속 토의하지요.

○소위원장 유필우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특별히……

○이인기 위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이의 없습니다.

○이낙연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매도청구권에 관한 것은 이미 법에 반영이 됐고 또 주택조합에 대해서 대지 소유권의 80%만 되면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100% 확보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 형평성, 특히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문제에 대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계속 보류시켜 나가는 것으로 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항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계속 소위에 계류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이게 마지막 부분에 오기 때문에 사실상 취지가 달성된 것은 하나하나 처리를 해 버려야지 기록상 전부 다 미결로 남아 가지고……

○소위원장 유필우 미결로 남는구먼.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예,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일부 수용된 것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첫 번째 항은 이미 달성이 됐고 두 번째 항은 여러 가지 다른 법과의 형평성 측면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정부와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이진구 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낙연 위원 예.

○소위원장 유필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부결처리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유필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3.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영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33분)

○소위원장 유필우 다음은 이영순 의원이 소개하신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이 주택법 개정안도 지난 4월 20일에 이미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분양가를 공시를 할 때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이 청원내용이 사실상 전부 다 법에 이미 반영되어서 이것도 역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낙연 위원 분양가상한제나 분양가공시제 대상에 사업이익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공시해야 될 내용에 사업이익이 포함됩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표준건축비를 제시하면서 거기에 적정한 이윤이 포함되도록……

○이낙연 위원 공시할 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이낙연 위원 ‘우리가 이만큼 이익 봤습니다’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그렇게 공시는 하지 않는데요.

○이낙연 위원 않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이낙연 위원 청원 소개위원의 의도는 이익을 공개하라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기 달성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그런데 적정 이윤 7~8% 정도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역공시라고 지난번에 이 표현했는데 원가가 아니고 내역공시, 그러니까 원가라는 개념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이런 품목에 적정 이윤까지 포함한 내역을 법에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달성한 것으로……

○이낙연 위원 이영순 의원이 제 옆자리인데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이익을 공개하도록 하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그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어서, 이영순 위원님이 법안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낙연 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유를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그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영순 의원의 주장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소위원장 유필우** 그러면 이영순 의원이 소개하신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미 지난 4월에 개정·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에 대부분 그 내용이 포함되었고 또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이익의 공개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 그것은 위원성 소지가 있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영순 의원이 소개하신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괜찮겠지요,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김영춘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김덕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유재건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40분)

○**소위원장 유필우** 다음 의사일정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하여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부터 6항까지의 내용이 유사한 것이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먼저 김영춘 의원님과 김덕규 의원님 소개한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른쪽 대체토론 요지 항목을 봐주시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재해 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재해관리구역의 개념을 시행령에다가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상습 침수·홍수·산사태·해일·토사 또는 제방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관리구역으로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했는데 종전 건축법 시행령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서 도정법의 “재해 등”이라는 표현만 가지고 재건축을 신청하다 보니까 각 지

방자치단체에서, 시청·구청에서 재해의 범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할 거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재해의 개념이 좀 막연하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규정을 일부 보완해서 명확히 해 줌으로 해서 상습 침수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비사업이 보다 용이하게 가능하도록 하고 법 시행상 불명확한 점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령으로 받아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저희가 앞으로 시행령 개정할 때 이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유재건 의원이 소개한 청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시공사 선정시기를 추진위원회 승인 후로 앞당겨 주는 것을 요망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재개발사업조합은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한데 그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는 조합 구성원 전체의 약 50% 동의만으로 일단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조합 구성원 될 사람의 약 반 정도만 동의를 받으면 누가 재개발을 추진할 거냐 하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50%의 의사로, 10분의 1로 구성된 위원들이 50% 동의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다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해서 현재와 같이 재개발사업조합이 토지소유자 80% 이상으로 설립한 이후에 시공자로 선택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현행대로 두는 게 적절하고요.

그다음에 조합설립동의 요건을 현재는 주민 전체 5분의 4였는데 엇그제 소위원회에서 허태열 의원이 제출한 도정법 개정안에서 4분의 3으로 완화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3분의 2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수용이 됐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6페이지 하단과 7페이지까지 들어있는 것은 각 정비사업을 할 때마다, 매 단계마다 인감증명서를 조합원들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는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하고 매 단계마다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번거로움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확인방법 또 인감의 위·변조에 대한 검증방법 이것만 보완이 된다면 이것도 역시 받아들이는 게 적절할 것으

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우리 이 차관께서……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첫 번째 항목은 저희가 2002년도에 제도 개선을 해서 현행 규정대로 만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재개발 추진을 주도하는 주민대표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뒤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이 시공사가 나서 가지고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합니다.

어떤 건설업체 같으면 하나의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50억, 60억씩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의 표를 사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비리가 발생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초기에 추진하고 기획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업체를 선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 해서 2002년도에 제도 개선이 됐고 그 이후에 그런 비리가 상당 부분 없어지는 등 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석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지난 금요일 법안심사소위에서 4분의 3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 항목은 인감증명서는 한 차례만 첨부하고 다음에 인감 날인할 때는 그때그때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혹시 모르는 위·변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을 한다면 절차는 훨씬 더 간소하게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3번 항목은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기 위원 인감증명서 각 단계가 보통 몇 번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 서종대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은 크게 한 4번 정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하고 조합 설립인가 할 때하고 관리처분계획할 때 하고 그 사이에 사업 시행 인가할 때, 이런 정도 있는데 그 사이에도 조급의 내용을 변경할 때마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열 차례

까지 가기 때문에……

○이인기 위원 인감증명서를 토지소유자 한 분이 보통 한 네 번을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재영 예, 기본적으로 4번이고요. 많을 경우에 한 십여 차례까지……

○이인기 위원 이것 조합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조합의 이사장 구성하면 거의 구속 다 되잖아요? 이것 하여튼 행정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 서종대 엇그제에도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만 관리처분계획 할 때는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인감증명서 첨부했다는 것 자체가 의결정족수를 적절히 확보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무조건 ‘인감증명서 첨부시오’ 하면 주민들은 그냥 때 주거든요, 조합 절차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별로 실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이낙연 위원님 의견……

○이낙연 위원 전문위원이나 정부 측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유필우 그러면 김영춘 의원님과 김덕규 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이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행령 추이를 봐서 나중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소위에 계속 보류시키도록 하고 유재건 의원께서 소개한 청원 중에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시공자 선정시기를 추진위원회가 과반수 동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조합설립동의 요건은, 말씀하신 것은 4분의 3으로 지난번 소위에서 허태열 의원께서 지적해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족이 됐다고 보고 인감증명을 매 단계마다 첨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형법, 형벌 이런 측면의 강화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반해서 우리 이인기 위원님은 좀……

○이인기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인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지요.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김선미 위원 실제 상황.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주거복지본부장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실제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위·변조 사고 같은 게 실질적으로 나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예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변조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위·변조는 막고 그 대신 절차는 좀 간소하게 하는 것으로……

○이인기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옳은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 해도 인감증명서 자체를 위·변조해 버리는데 인감증명서를 첨부 안 하고 도장만 찍으라고 해버리면…… 형사처벌하는 문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든 폐지하든 간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범죄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인감증명서라도 첨부되어 있어야지 사기를 치더라도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위협이 있지 않느냐 이런 두려움을 가지지요. 가져도 범죄가 발생되는데 이것마저 없애 버리면 위조·변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빈번할 텐데 재개발하는 업계의 현상을 좀더 스테디해야 판단이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나 재개발조합에 사고 나면 사람들이 1번·2번·3번, 구속·구속·구속, 그래서 공금 횡령·횡령·횡령 다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이 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의해 보시지요.

○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 서종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께서서는 법률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우선은 이 청원의 내용이 전부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법 개정사항이 있으면 어차피 법안이 발의되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인감증명서 문제는 지나 차관님이나 한 번 정도 하는 것이나 여러 번 하

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려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다면, 꼭 필요하다면 조합설립 인가할 때 하고 관리자 분계획 인가할 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고 나머지는 대체하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법안이 올라와서 다시 심의할 사항입니다. 법 개정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어떻게 할까요? 인감 문제는 절차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김선미 위원 그러면 법안 개정 내용에 이게 다 들어가 있나요?

○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 서종대 아닙니다.

○김선미 위원 아니잖아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앞으로 내야 합니다.

○이인기 위원 이것을 받아들이면 법안 처리에 대한 상당한 압력을 받는 것이지.

○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 서종대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법 개정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실태·현황 이런 것을 좀더 파악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법률안 심의할 때 심사하시는 것으로……

○이인기 위원 보류합시다.

○이낙연 위원 그러십시다.

○소위원장 유필우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선 실태조사 후 보고를 청취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보류된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재건 의원께서 소개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정부가 먼저 여러 가지 실태조사 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7.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김춘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49분)

○소위원장 유필우 다음은 김춘진 의원께서 소개하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김춘진 의원 소개의 청원은, 이것도 역시 지난 6월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기반시설부담금법 개정 심의 시에 심재철 의원이 이와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제출해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비영리 시설만 있다면 모르지만 그중에는 실버타운 같은 소위 영리성을 갖는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섞여 있기 때문에 영리성을 갖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감면·면제해 주는 것은 동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영할 만한 그런 논리적 타당성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언제 이것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완료했어요?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6월 22일에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낙연 위원 영리·비영리를 구분해서 규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비를 지원해서 비영리 법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김선미 위원 확대하자?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영리법인이 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포함시키자 하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시키게 될 경우에는 다른 시설과 형평의 문제가 있으니……

○이낙연 위원 그러니까 이 청원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비영리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이미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이낙연 위원 그러면 이 청원은 영리시설에 대해서 해 달라는 겁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영리성이 있는 것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겁니다.

○김선미 위원 영리까지 확대하는 거니까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법안

심사소위에서도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같은 취지로 계류시킨 바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돼 버릴 경우에는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유필우 사회복지시설을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차별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재영 예,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농촌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 법인이 하는 것은 50% 감면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유필우 도시에는?

○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재영 도시에는 지금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그것 왜 그런가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이 도시의 여러 가지 빈곤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더 필요할 텐데?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도시환경기획관실 도시계획팀장 전병국 그것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게 뭐지요?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도시환경기획관실 도시계획팀장 전병국 그러니까 지금 FTA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감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월 28일 시행령 개정 시에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 법인이 하는 것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김춘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호법뿐만이 아니라 위안부 처벌에 관한 것, 성폭력범죄자 수용하는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시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져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법의 취지를 형해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 중에서 영리성을 가진 시설들도 다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저번에 법률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기반시설부담금법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비영리 법인이 하거나 농촌지역의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초 사회복지시설 거기에는 저희들이 면제하거나 경감을 하고요, 그 외의 것은……

○이낙연 위원 이미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재영 예.

○이낙연 위원 하고 있는 근거는 뭐예요, 감면의 근거?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감면의 근거는 지금 시행령에……

○김선미 위원 그런데 아까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 도시는 안 해 준다면서요?

○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재영 비영리 법인 중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 2조3호에 따른 시설인데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자료를 제시하며)

이 표를 하나 카피해 드리지요.

○김선미 위원 쥬 보세요.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도시환경기획관실 도시계획팀장 전병국 현재는 우리나라 전체에 사회복지시설이 한 88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33개를 감면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감면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농촌생활에서 비법인에 의해 가지고 해 주는 관계가 거의 50%씩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보면 16개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금 경감 대상이, 아예 전부 면제되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실비노인요양시설로서 비영리 법인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100%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50% 감면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팔호해 가지고 비영리 법인이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 이것은 50% 감면하고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

육시설도 50%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춘진 의원안대로 하면 이 전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재영 기반시설 부담금법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50%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춘진 의원안은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100% 면제를 시켜 달라 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유필우 아까 우리 이낙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 법인이 농촌지역에 하는 것은 면제를 해 주고 비영리 법인이 동일 사업을 도시지역에 해 주는 것은 감면을 안 해 준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여기 보면 노인복지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시설만 전액 감면을 해 주고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여러 가지 비영리 법인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안 해 주는, 역시 선정 과정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농촌은 해 주고 도시는 비영리 법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이 부분은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기가 된 것은 FTA 이런 사항 때문에 농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일부 풀어 주자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시설들을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으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체 시설의 종류가 많고 그래서 정부 내에서 부처 간의 협의과정을 아주……

이런 협의를 하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무적인 협의들이 따르는데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사회복지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많이, 어떤 것은 좀 적게 차등을 두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위원님들, 이것 어떻게 할까요?

○김선미 위원 지금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 경감 대상이, 이런 것은 100% 되는 거네요? 100%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감만 해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도시환경기획관실 도시계획팀장 전병국 이것은 전액 면제되는 것

입니다. 부과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인기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경감 대상하고 비경감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비경감 대상을 경감 대상으로 늘리는 방법 없습니까, 적절한 방향에서?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도시환경기획관 이영근 도시환경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하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약간 리즈너블(reasonable)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 및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부과 대상, 그러니까 부과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형평성 측면에서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지적한 대로 사회복지시설 감면 대상, 또 감면 대상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검토 결과를 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협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시키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도시 농촌 간 그것도 좀 애매해요. 사실은 도시 빈곤층이 더 심각하거든요.

○소위원장 유필우 그러면 금년 내로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도시환경기획관 이영근 예,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연말까지 나오면 보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회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조속처리에 관한 청원(이주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01분)

○소위원장 유필우 다음은 이주영 의원이 소개

하신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처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이주영 의원의 소개의 청원은 서재관 의원께서 제출한 혁신도시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한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금년 1월 11일 저희 위원회에서 서재관 의원님이 주장하신 내용, 소위 말해 개별이전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이 부분에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청원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반영해서 처리가 되었으므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9.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의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영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02분)

○소위원장 유필우 다음은 이영순 의원이 소개하신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의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국감 때도 수공 감사시에 이영순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관련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또 찬성과 반대가 엇갈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증평가를 거쳐가지고 작년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바 있고 금년 2월 실시계획이 공고되어서 현재 보상과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가 가능할지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종합해서 볼 때 중지시키기가 실제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시지요.

○소위원장 유필우 정부 의견.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정부 내에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는 방안과 이영순 의원이 소개한 청원 내용대로 천변저류지와 제방을 건설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경제성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결론이 났고, 이미 보상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돌이키거나 또 재논의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하는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문학진 위원님.

○문학진 위원 차관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런데 이것 문제는 없나요? 그때 한참 지역주민 간에 갈등도 많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갈등은, 수몰지 주민들은 아무래도 반대의견이 좀 있고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도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부분만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놓고 그쪽에 한여울 주민대책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정부 측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최근 들어서는 갈등이 거의 해소 단계에 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런 이해관계 말고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됐던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그때 논의를 할 때 양 당사자, 양쪽이 다 참여해서 논의를 했고 같이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때 지속발전위원회도 참여를 해서 논의했고 그때 같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이상 문제 제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답변대로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검증평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고 공사도 이미 착공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원을 받아들여야 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소위에 계속 계류시켜서 앞으로 추이를 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결정하는 게 낫겠지요?

○이낙연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소위원장 유필우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0. 경매완료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구제에 관한 청원(유선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05분)

○소위원장 유필우 다음은 유선호 의원이 소개하신 경매완료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구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유선호 의원 소개의 청원은 작년에 통과되고 금년 4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법으로서, 지난해 정기국회 말에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피해자가 많이 늘어 가지고 상당히 빨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안심사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이미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 임차인과 그리고 주택기금 이자가 6개월 이상 연체됨으로 해서 사실상 부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도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해서인데, 이 청원 내용은 이미 부도가 나서 임대아파트가 경매 처리된 이후에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그런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 제정 당시의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미 소유권이 다른 경락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좀 억울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소유권이 다 정리되고 경매가 다 끝난 상태 그 이전에 소급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이런 법 개정이 적절할는지, 소급 문제는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지난번에 이 법이 제정될 때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한 것은, 첫째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정부나 주택공사의 부담 이런 것들도 고려했고 또 하나는 법적 안정성 이런 측면도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어쨌든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국민주택기금 이자 미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해서 이미 경매가 된 것은 법적인 처리가 완료된 것들인데 그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법 개정 당시에 이런 게 아예 포함되었으면 모

르되 일단 그 대상 범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아직 1년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제정된 법 취지에 따라서 그대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김선미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소급해서 주기가 좀 애매하지요. 경매가 완료된 것이 많나요? 이 특별법 시행하기 전에 경매가 완료된 것들에 대한 통계가 많은가요?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그렇습니다. 이 청원 내용은 이미 경매가 완료되고 소유권이 다 넘어간, 과거의 임차인 소급 문제가 있고 또 법적 안정성을 해할 문제도 있고 또 어디까지를 소급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생기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또 하나는 부도임대주택 처리하는 방식이 주택공사가 이 집을 사들여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려 나가버렸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또다시 사들인다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 서종대** IMF 이후에 부도임대가 35만 채 되는데 29만 호가량이 경매되고 정리가 되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6만 채입니다. 6만 채가 이 법 적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29만 호 종전에 된 분들도 전부 찾아서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국회에 낼 경우에는……

○**김선미 위원** 35만 채 중에 29만 채가 정리됐는데 사실은 이 6만 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금 특히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 서종대** 6만 채 중에서 저희들이 주공에서 매입해달라고 신청한 것은 1만 7000채고요, 요건을 갖춘 것은 전량을 금년에 매입해 주겠다고 이미 했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런 계획이 다 수립돼 있나요?

○**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 서종대** 예.

○**김선미 위원** 신청하는 것은 전량을 다 해주겠다?

○**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장 서종대** 예, 그러나 경매신청까지는 돼야 됩니다. 요건을 갖추었을 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위원** 다른 경우의 임차인들은 임차보증금을 단 한 푼도 구제받지 못했나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대개 경매된 주택들은 상태가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3자 또는 임차인이 크게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경매

를 받은 것이거든요. 35만 호 중에서 29만 호는 그래도 악성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6만 호가 악성이거든요.

6만 호는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부득이 정부에서 나서서 주택공사를 통해서 매입하겠다는 거고요. 29만 호는 일단 처리가 된 것입니다. 처리된 상태에서 또다시 그것을 사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정부 재정부담만 늘리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임차인이 그나마 떠안고 사겠다 하면 그래도 형편이 좀 낫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선미 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의가 없는데 29만 호가 다 그런 억울한 감이 해소됐느냐 그것은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네요?

○**소위원장 유필우** 경락된 29만 호의 거주자들이 어느 정도 임차보증금을 못 받았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29만 호는 대부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거든요. 손해를 별로 보지 않았거나 조금 보더라도 집값 상승 이익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임차인이 경락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주택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해결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김선미 위원** 이렇게 다시 청원이 올라온 것은 해결 안 된 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다시 사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경매가 됐다는 것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공사가 공공임대사업을 계속하려고 해도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인수받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미 다 팔린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중에 몇 개를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법리적으로는 그런데 과연 그로 인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김선미 위원** 거의 없다고 국가에서는 보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저희는 일단 그 부분은 해결됐다고……

○**이낙연 위원** 경락은 대부분 주공인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어떤 경우에는 통째로 다른 주택사업자가 인수받아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임차인들이 경락을 받아 갑니다.

○**김선미 위원** 이 29만 호 대부분이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이낙연 위원** 해결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선미 위원** 그렇지요. 제3자가 아니면요.

○**소위원장 유필우** 부도공공임대주택 관련 임차인 보호에 관한 것은 특별법으로 현재 시행 중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경매가 완료된 부도임대주택 건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얘기한 대로 소급하는 문제, 범위를 한정하는 문제 또 이미 사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법을 다시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추이를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소위에 계속 계류시켜 검토하는 것으로 하되, 정부가 아까 얘기한 이미 경락된 부도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례라든지 그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11. 오미재터널 공사 착공 요망에 관한 청원

(박세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15분)

○**소위원장 유필우** 다음은 오미재터널 공사 착공 요망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박세환 의원께서 소개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박세환 의원 소개 청원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에 소재한 국도 31번 일부 구간 중 지형이 험한 지역 중에서 오미재 고개에 터널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인데 약 4km 구간이고 사업비는 48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의 2차 국도건설계획을 수립할 당시 이 구간에 대한 B/C 분석이 0.61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의 3차 국도건설계획에는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그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저희가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공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

에 포함시켜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터널을 뚫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중단경사가 11%인데 이 11%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통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터널 뚫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는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연구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것을 촉구하는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정부 측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중기계획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시키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비주거 건물의 위반시설 자진철거 대책마련과 일부 양성화 요구에 관한 청원(이낙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18분)

○**소위원장 유필우** 다음은 존경하는 이낙연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비주거 건물의 위반시설 자진철거 대책마련과 일부 양성화 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이낙연 의원님 소개 청원은 비주거용 건물의 위반시설을 자진철거하는 경우에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소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서 비주거용 건물의 위반시설도 양성화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특별법에는 적용 범위를 2003년 12월 31일 당시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비주거용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만 청원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남부한타 남부자와의 형평성이라든가 법집행의 안정성이 고려돼야 할 것이고 또 비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할 경우에 양성화 규제심사에 따른 측면 또 정말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해야 될 필요성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지난 82년, 2000년, 2006년 세 번에 걸쳐서 양성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관계로 아직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낙연 위원**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러한 민원이 자주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실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위법건축물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죽 반대를 해 왔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허용되었던 이유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양성화시켜 주자 이런 논리에서였고요. 비주거용은 주로 사업용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허용해 주자 하는 논의는 여태까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 할 때마다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그런데 국회에서 주거용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자는 쪽으로 설득해서 정부에서는 마지못해 수용을 하고 또 그 뒤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저희는 2만 불 소득 시대에 위법을 자꾸 양성화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소개 의원이 계시는 데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도시환경기획관 이영근**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반건축물에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도 1차로 30일 이상의 시정명령 기간을 줍니다. 또 2차도 30일 이상의 시정명령 기회를 줍니다. 그다음에 10일 이상 계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그때 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자진철거할 기간 없이 이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낙연 위원** 이제라도 자진철거하려고 보니까 강제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기간을 못 지킨 것은 미안한데 이제라도 할 테니 봐줄 수 없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못 봐 주겠다, 당신은 계속 돈이나 물어라 그 얘기 아녜요? 자기가 잘못을 시정하겠다고 계속 놔둬라, 돈 물어라 이것 좀 이상하잖아요?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도시환경기획관 이영근** 이것도 계속 부과하다가 위원님들께서 1년

에 두 번씩, 5회 이내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많이 축소했고 또 하나 처음에는 법사위에 가서 부결이 났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처음에 이것 양성화해 줄 때는 무허가까지 한번 해 줬었어요. 그런데 무허가는 안 된다. 허가를 받았는데 그것보다 면적을 더 많이 키워서 지었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봐 주지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잘 몰라서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부터 무허가는 아예 대상도 안 났고 일부 불법……

○**이낙연 위원** 양성화 이전에 자진철거하는 경우는 조금 봐준다고 그런 것 없나요?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하는데 시정한 놈하고 시정 안 한 놈하고 똑같이 대접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똑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이미 이행강제금을 낸 사람도 있거든요. 낸 사람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형평 문제를 보면, 낸 사람과 안 낸 사람 그리고 자진철거하겠다는 사람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도시환경기획관 이영근** 그리고 마지막 양성화해 준 게 올 2월까지였습니다. 작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한 1만 2000여 종의 주거용 건축물이 양성화됐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이 문제는 비주거용 건물의 특수성 또 다른 법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취지는 일리가 있지만 좀더 정부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의견이지요?

○**김선미 위원**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많나요? 이것 때문에 자진철거를 못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도시환경기획관 이영근** 액수가 보통 위반면적 곱하기 10%, 그러니까 위반면적이 많으면 이행강제금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행을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니까 누적이 돼서 많은 거지요.

○**김선미 위원** 이제는 법을 지키고 싶어도 이것이 쌓여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해 주기 시작하면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설교통부국토균형발전본부도시환경기획관 이영근** 악용이 문제입니다.

○**김선미 위원** 해 주게 되면 우리도 버티다 보면 언젠가 해 줄 것이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고 이행강제금 때문에 철거 못 하고 계속 범법자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유필우** 이낙연 소개 의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정부가 기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자진철거하는 경우는 안 해서 이행강제금을 집행한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청원소위에 계류시켜서 검토보고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낙연 위원** 중간에라도 자진철거하는 경우에 개전의 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늦었지만 법을 지키겠다는 사람한테 아무런 칭찬도 안 해 주고 ‘너 어겼으니까 한번 두고 봐’ 이런 인상인데요?

○**소위원장 유필우** 이낙연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아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자진철거할 경우 이행강제금 일부를 감면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법리상 문제도 있고 또 정부 내 다른 부처, 법제처라든지 법무부 이런 데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선미 위원** 분담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서 보고한 다음에 결정을 짓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에 계속 계류하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 중앙선·경춘선 소음방지를 위한 망우역 일대 터널화에 관한 청원(임인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28분)

○**소위원장 유필우** 다음은 임인배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중앙선·경춘선 소음방지를 위한 망우역 일대 터널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울복** 임인배 의원께서 소개하신 이 청원은 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한 사업으로서 중앙선 복선화 및 경춘선 이설 복선화 사업입니다.

청원 요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망우역을 터널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돛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경춘선 신내역 환승시설을 지하화해 달라 이런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돛을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89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신 방음벽 설치라든지 열차의 운행속도를 제한한다든지 레일을 장대화하는 저감대책은 마련돼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신내역 환승시설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6월 30일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중랑구가 지상 통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망우역 일대를 터널이라든지 돛형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폭이 120m라 우선 기술적으로도 쉽지가 않고요. 120m에 2km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돛형으로 설치하려면 가운데다 폴대를 죽 세워야 되는데 지금 있는 철도 레일 자체를 일부 뜯어내지 않으면 기둥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현재 12개 선로로 되어 있는데 5개 정도는 뜯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신내역은 마침 철도공단하고 중랑구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역에서는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하철 6호선 역사하고 환승역을 마련하려면 지하로는 처리하기가 곤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도공단하고 중랑구간의 합의를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하나는 해결됐고요.

지금 방음벽 설치, 열차 운행속도 제한, 레일 장대화 등 저감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됐는데도 이런 게 올라왔나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장 홍순만** 올라온 게 2005년 12월인데요, 그 이후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2007년 4월에 채무 구조조정이 완료됐고요, 2006년 6월 30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랑구청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제기될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김선미 위원** 상황이 다르네요. 그러면 다 해결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장 홍순만** 다 해결됐습니다.

○**이낙연 위원**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이 완전히 차단됩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이렇게 설치가 되면 이쪽은 해결되는데 사이가 넓으니까, 위까지 소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막아 달라는 얘기

인데……

○**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재영** 동형으로 하면 완전히 차단이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방음벽이 있는 쪽은 저감이 되는데 소음이라는 것 자체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 가지고요.

○**이낙연 위원** 주변 아파트에서 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재영** 들리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도로나 철도 폭이 좁으면 방음벽만 해도 웬만큼 차단이 되는데 120m나 되니까 가운데서 발생하는 소음은 방음벽으로 차단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썩워 달라는 얘기인데 썩우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선미 위원** 그런데 요즘 방음벽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많이 감해지는데요? 형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재영** 예, 많이 그렇게 했는데 폭이 워낙 넓어 가지고요. 12개 선로가 지나가서 이것을 커버 못 하나구요.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장 홍순만** 이 지역의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60dB 이하로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재영** 주거지를 65dB 정도로 하는데요, 그것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김선미 위원**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나요?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장 홍순만**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 구간에 몇 가구 정도나 있나요?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광역교통기획관 이승호** 역세권이기 때문이에요.

○**김선미 위원** 아니, 떨어져 있는 것은 관계없고 바로 옆에 있는 게 문제지요.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광역교통기획관 이승호** 광역교통기획관입니다.

아파트 세대 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민원이 생긴 결정적인 이유는 망우역이 옛날보다 역의 기능이 달라졌습니다. 경춘선이 망우역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또 중앙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화물들이 망우역에서 입환되고 다른 방향으로 화물을 갈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선미 위원** 기능확대가 돼 버렸네요.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광역교통기획관 이승호** 예, 그래서 옛날에는 아파트에서 선로가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경춘선이 나가는 방향에는 그 거리가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없던 민원이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낙연 위원** 방음벽의 높이를 더 높게 하는 방법도……

○**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재영** 일단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소음은 막을 수 있는데 조망권 자체가 버려지기 때문에 역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소위원장 유필우** 환승시설을 지하화한다는 것은 합의가 되었으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소음은 여전히 상존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장 홍순만**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소음 저감대책을 많이 했습니다. 방음벽 시공을 할 때도 좀 조정을 했고 장대레일이라든지 탄성분기기 설치 이런 것을 통해서 했고 열차 속도도 25%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입환도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만 하니까 낮 동안에만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60dB, 65dB은 몇 층까지의 소음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선미 위원** 평균입니까? 아니면 층층마다 다를 수 있지요?

○**소위원장 유필우** 그게 5층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장 홍순만** 5층까지입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그런데 지금 그 주변의 아파트가 20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층까지만 하면 위의 사람들은 하나도 체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장 홍순만** 위원님, 소음이라는 게 확산돼 가면서……

○**소위원장 유필우** 위로 올라가지요?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장 홍순만** 올라가는데 소음이라는 게 밀도가 있다가 확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갈수록 소음의 양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5층 정도까지만 하면, 저희들이 거기가 가장 소음이 많다고 보는 것이



기 때문에 거기서 측정한 것보다 위로 올라가면서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그래서 양옆에 고층아파트가 죽 있으면 위로 퍼져서 10층 이상은 소음이 상당히 더 낮네요.

이 문제는 두 가지 중 하나는 합의가 된 사항이고 소음 저감 대책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동안 노력했지만 지금 현재 추가로 할 일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장 홍순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선미 위원 이것은 5층까지 말고 그 위층까지 한번 더 측정해 보지요. 그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장 홍순만 알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시간별로도 그렇고요. 몇 가지 데이터 좀 주세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측정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것하고 달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지역은 좀더 다각도로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소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녁시간인데 저녁시간에 소음이 좀 덜 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철저히 시행을 하고 그래서 하여간……

○소위원장 유필우 이 청원의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현장 측정 결과를 보고하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를 보고한다는 전제로 소위원회에 계류시켜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14.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 폐지에 관한 청원 (최재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37분)

○소위원장 유필우 그러면 최재천 의원님이 소개하신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 폐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울복 이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규모의 차고지를 확보해서 그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대개 일반 택시기사 분들이 집 앞이든 주변이든 파킹해 놔다가 아침 일찍 출차를 하게 된 후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다른 차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다, 하니 이 시행규칙을 폐지해 달라는 그러한 청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검토하시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그렇다고 하면 관광버스, 소위 전세버스라든지 용달차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경우도 차고지증명제가 필요한데…… 또 한 가지 정부차원에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도 앞으로는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이강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정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좀 딱하기는 합니다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의 입장과 그 주변 지역에 사는 분들의 입장이 좀 조화돼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방향과 관련해서는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딱하다는 사정은 알지만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유료주차장에다가 자기 돈을 주고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문제를 풀어 보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오히려 최근에는 각 개인이 승용차를 가지게 될 때도 차고지증명제를 하자 그런 논의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업용 자동차, 택시라든지 전세버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 개인도 승용차를 소유하게 될 때는 차고지증명을 하자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면 안 될까요? 지자체에서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이 없을까요?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장 홍순만** 제가 차관님 말씀에 조금 더 부언을 드리면, 개인택시 차고지는 아파트라든지 월세·전세 집주인 동의서까지 다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확보한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전체 74% 정도 되고요. 나머지 26%가량이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만약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해 주면 나머지 74% 확보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고지 확보 의무를 배제하면 불법주차를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됩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나는 차고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화재 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쪽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 대길에서는 전부 다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좀 있지 않겠느냐, 개인택시도 사업자인데 사업자는 자기 영업소와 차량을 가져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고 일반 택시의 경우도 차고지를 전부 다 확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낙연 위원** 법안소위에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기지요.

**○소위원장 유필우** 지금 법안소위에 대안이 계류 중입니까?

**○김선미 위원** 여객자동차에 포함되나요?

**○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재영** 예.

**○김선미 위원** 거기에 개인택시도 들어가 있나요?

**○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재영** 개인택시도 여객자동차에 포함됩니다.

**○김선미 위원** 그러면 법안 심사하면 되겠네요.

**○소위원장 유필우**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청원심사소위에 계류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그 법안이 가 있지만 건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 누차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는데 반복해서 똑같은 기계적인 답을 하고 있으면서 미루고 있어요.

차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인택시라든지 택시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지금 택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딱히 만족할 만한 대안은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희가 볼 때 해결책을 같이 마련하기 위해 택시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매달 한 차례씩 모여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태를 완전히 반전시킬 정도의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불편한 작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청원심사소위에서 이 청원안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여러 가지 경위를 지켜보면서 계류시키겠습니다.

다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그렇게 부언합니다.

**15. 신안산선 대림삼거리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전병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44분)

**○소위원장 유필우** 다음은 전병헌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신안산선 대림삼거리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수석께서 설명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고, 마침 소개하신 전병헌 의원이 와 계시니까 필요한 경우에 부연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울복** 전문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서 신안산선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제시된 노선인데 거기에는 구로디지털단지역하고 신풍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림삼거리가 있는데 대림삼거리에는 상주인구가 10만 여명이고 최대 15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철역을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 설명을 먼저 듣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철도는 일반철도·광역철도·도시철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도시철도는 한 도시 내를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광역철도는 그 도시와 주변도시를 연결하는데 그 주변도시가 하나의 교통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을 때 광역철도라고 합니다.

도시철도는 그 도시 내를 이동하기 때문에 역

간 간격을 비교적 좁은 간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광역철도는 인근 도시와 다른 도시를 연결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역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광역철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광역교통 정책업무편람, 여기에 역간 거리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게 마침 1.5km입니다.

그래서 광역철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게 일용 맞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병헌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이 청원의 대상 지역을 보면 유동인구나 현재 거주인구 수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본다면 철도의 수익성 확보라든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편람 그 자체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고민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하나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쉽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낙연 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같이 풀어 갈 수 있는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기본계획 용역은 기왕의 기준에 따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더 집어넣는 점에 대해서 그게 전체적인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고요.

이게 지금 대림삼거리 양옆에 구로공단역하고 신평역이 있는데 둘 다 2호선하고 7호선하고 환승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로공단역하고 신평역은 반드시 환승역을 설치해 줘야 전철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비좁은 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역을 하나 더 만들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쪽에 워낙 인구가 많아 가지고……

○**이낙연 위원** 주민이 몇 만이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10만이고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 15만입니다.

○**이낙연 위원** 15만 명더러 매일 800m씩 걸어다니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845m, 980m 이렇게 때문에……

○**김선미 위원** 어느 정도 되죠? 1.5km 이내죠?  
그런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 돼요?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광역교통기획관 이승호** 추가역 신설하는데 저희들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1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연간 1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승객 수는 좀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문학진 위원** 도시권에는 역간 거리가 800m짜리도 있다면서요?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장 홍순만** 도시철도의 경우에 그렇고 이것은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문학진 위원** 광역철도지만 실체는 도시권이라는 말이 안 맞나? 거기를 달리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광역교통기획관 이승호** 대도시권을 달리는 것입니다.

○**문학진 위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장 홍순만** 도시권 안에서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역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신안산선이라고 그러면 신안산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을 하나 더 만들면 그 사람들 모두 지체시간이…… 여의도까지 가야 되는데 역이 하나 더 생기면 지체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광역적으로 가는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1.5km 정도로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것은 기본계획 할 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문학진 위원** 전병헌 의원 오셨는데 1분 스피치라도 한번 시켜 보지요.

○**소위원장 유필우** 전병헌 의원, 상황을 한 말씀 하십시오.

○**문학진 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한 1분만 하세요.

○**전병헌 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위원회에서 한 검토보고에 잘 나와 있고 또 존경하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은 1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대형 병

원과 대형 종교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 구간에는 약 800m짜리, 800m가 안 되는 구간들도 여러 개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약간의 도심 외곽지역이면서 도심 지역으로서 여기에 있는 인구와 주민들에게 광역철도 기능만을 강조하면서 염원을 소홀히 다루게 된다면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해당 위치에는 대형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지난 토요일에는 주민들이 역 유치를 위한 시위를 하면서 가두행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것과 달리 현지 주민들에게는, 영등포구 주민들과 동작구 주민들이 모두 다 이해가 일치되고 있고 또 어찌됐든 광역철도가 지금 1단계가 여의도까지 가기 때문에 여의도까지 온다고 하면 거의 종점에 인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도심으로 들어와서 여의도까지가 1단계이고 2단계는 청량리까지인데 광역철도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상 거의 종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구 10만 명 내지 유동인구 15만 명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을 고려해 주심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요.

지금 역을 하나 신설하는 데 1200억이 든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1단계가 2조 358억원인데, 제가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 보기에 1200억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광역교통기획관 이승호** 지하 30m의 역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병헌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춘희 차관님도 말씀해 주셨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광역의 기능을 해서 사실상 도심으로 접근해 온 철도에게 약간의 도심철도 기능도 탄력적으로 부과하면 효율성과 경제성이 보다 높은 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곡한 호소와 간언을 드립니다.

**○이인기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등포 주민들을 대신해서 권영세 의원님께 이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권영세 의원님과 같은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철도는 구간 거리를 1.5km, 그리고 도시철도는 1km 이상으로 한다, 이런 원칙을 정해 놔주세요.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서울 주변의 각종 지하철 중에 1.5km와 1km 안인 경우에도 역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광역교통기획관 이승호**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의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이런 일부 구간을 복선전철화하면서 광역철도로 지정하여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사업들은 기존에 있던 역을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노선에는 1.5km가 되지 않는 역도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도시철도도 1km 이내인 경우가 있기는 있지요?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광역교통기획관 이승호**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장 홍순만**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그림을 보니 전병헌 의원님과 권영세 의원님 말씀대로 대림삼거리에 전철역을 설치하는 게 맞는데 구로디지털단지과 신풍이 7호선과 2호선의 환승 위치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신풍과 구로디지털단지에 환승에 따른 전철역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대림삼거리 양 구간의 거리가 845, 980이라는 제한을 받으니까 형식적인 규칙을 내밀어서, 주민 편의는 뒷전이고 형식적인 규칙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기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헌법도 아니고 규칙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규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림삼거리의 교통 여건, 7호선과 2호선의 환승이 아니었다더라면 대림삼거리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형식적인 논리보다도 진척이 더 나가기 전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장 홍순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수도권으로 들어오면 대림삼거리 이외에 비슷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데서 다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 수용하느냐, 또 기획예산처 지침에 보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가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지자체가 100% 다 부담한다 그래도 못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저런 것들과 형

평성을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지자체 부담을 더 늘린다? 100% 다 부담한다?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장 홍순만** 그러니까 지자체가 다 부담한다고 그래도 지금 못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래도 안 해 주는 것은 왜 그래요? 시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장 홍순만**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김선미 위원** 글썽요, 이것 한 번 더 선다고 한 2분~3분? 많지 않아요.

○**소위원장 유필우** 이춘희 차관, 그 지역이 교통 편의 소외지역이고 상습 정체지역은 맞습니까? 그것은 동의합니까?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교통 측면에서는 아주 취약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취약성이 많은 아주 특이한 지역이다?

○**김선미 위원** 거기다가 병원 밀집지역이에요. 거기에 병원이 밀집되어 있는데 병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검토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유필우**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시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은 교통 편의 소외지역이고 취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 차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금년 말까지 시행되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에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것을 촉구하고 그때까지 이 소위에 계류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이견 없으시지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소위원장 유필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로 제출)

(15시58분)

○**소위원장 유필우** 다음은 정화원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의 시행령 폐지 검토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복** 정화원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에 대한 요지는 인도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으로 인해 많은 시각장애인이 물리적인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관련 규정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9조제2호를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사항은 이 법 시행령 제19조제2호가 아니고요, 제19조제2호는 소위 보행우선구역 내에서의 블라드 설치, 소위 말뚝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작년 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 규정대로 지자체에서 보행우선구역 지정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다, 다만 블라드 설치는 현재 건교부가 운영하고 있는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인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건설교통부가 운영하는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말뚝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뚝 주변에 점형블럭을 설치하는 종합적인 유연재, 유연한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행령 폐지 검토는 조금 다르고요, 다만 앞으로 건교부가 이러한 진입억제 말뚝을 설치할 때 기왕에 운영하는 관리지침에 따라서만 해 줘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정부 측 의견……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블라드는 자동차가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라드를 제거하게 되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보행환경이 나빠지고 보행자와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이유에서 설치를 권장하는 그런 사항인데 청원인이 폐지 요구한 조항은 보행우선구역 내의 블라드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 보도상의 블라드 제거를 해 달라는 청원 취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서 블라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블라드를

## 16.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의 시행령 폐지 검토에 관한 청원(정화원 의원의 소

설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하더라도 재질을 충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충격 흡수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적절하게 보완·발전시키는 것으로 이 청원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낙연 위원**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선진국에서 지금 쓰고 있는 제도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블라드를 설치를 많이 해 봤고 운영도 많이 해 봤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할 텐데 아직은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라서 아직 우리도 명확히 잘 알지 못하고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무슨, 지레 ‘많이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분야가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별로 발전을 못 시킨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논의하고 있는 것이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라는 개념이 논의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인구들이 갈수록 늘어나니까 장애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노령인구들은 정상적인, 그러니까 30대, 40대 이런 사람들하고 똑 똑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기준을 적용하면 그것은 당연히 일반인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에시당초 계단을 만들고 옆에다가 장애인 보행통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계단 자체를 최소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아닌가……

○**이인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법령상에 딱 안 맞아들더라도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원칙론에서 일치를 보시고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도 계시는데 우리 국회 내에도 보면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해서 막 막아 놓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불규칙하게, 보기 흉하게, 질서 없이 되어 있는데 하는 김에 건의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나갔습시다마는 아까 방음벽 설치 이야기를 했는데 방음벽이 환경, 미관, 예술성 이런

측면에서 어떨까 그것도 한번…… 과연 이것 소리만 막는 게 중요하나, 도시의 아름다움, 미관도…… 요새 보면 과거와 달리 나라의 살림, 여건이 좋아지니까 과거보다는 방음벽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흉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걸 잘 검토해 보세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예.

○**김선미 위원** 곁들여서요 실제적으로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보행하기에는 전체적인 우리 도로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밖에는 이동할 수 없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있는 것도 제대로 이용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점형블럭 이것 위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선로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다각적 고려를 많이 해 주세요. 아찔아찔한 경우가 참 많아.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선진 외국 규정들을 그대로 베껴 쓰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애인들을 이런 법령, 제도, 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참여시키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점차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윤복** 전문위원 참고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정화원 의원의 청원 취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것을 내용을 좀 보완해서 차후에 규칙으로 상위법령으로 올려 가지고 이것 강제력을 좀 행사하는 의미에서, 유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듭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그 건에 대해서 정부는……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아무래도 좀 시행하는 데 자신이 없으니까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면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하고 점차 자신이 불고 확신이 생기면 법규로 격상시켜 나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 나가고 이런 부분은 서둘러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유필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정화원 의원이 소개하신 이 청원안은

블라드를 폐지하면 또 다른 역기능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소통, 보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지침보다는 규칙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체제상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서구에서 하고 있는 것 등을 포함한 장애인의 보행대책, 편익증진 측면에서 건교부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보완한다 하는 전제로 그것을 촉구하면서 이것은 우리 소위에 계속 계류하는 것으로 결의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또 건교부 관계관 수고 많으셨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챙길 것은 챙기고 해서 다음 청원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0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 선 미    문 학 진    유 필 우    이 낙 연  
이 인 기    이 진 구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전 병 헌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	병	곤
전 문 위 원	이	울	복
입 법 심 의 관	박	명	수

#### ○정부측 참석자

건설교통부

차            관	이	춘	희
정책홍보관리실장	이	재	영
주거복지본부장	서	중	대
생활교통본부			
본    부    장	홍	순	만
광역교통기획관	이	승	호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이	영	근
도시환경기획관실	전	병	국
도시계획팀장			
기반시설본부도로	송	기	섭
기획관실도로정책팀장			